

# 제14차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의결사항

심의일자 : 2018. 2.7.(서면심의)

## 안건명

- 우수지관리 기본계획 용역발주 심의

## 심의결과

위 안건에 대한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 별첨 위원별 지적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조건부 채택」 의결함

## 【주요 심의내용】

- 현재 사용중인 주차장, 체육시설, 생태공원에 대한 이용객의 만족도 분석 및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우수지 활용현황을 조사하도록 보완할 것
- 기 수립된 우수지 활용계획에 따른 정비추진현황 및 문제점 분석하도록 보완할 것
- 우수지 시설 도입에 따른 기존 우수지에 대한 치수안정성을 검토하도록 보완할 것
- 식재계획 수립시에는 활엽수 등 낙엽에 의한 펌프시설의 흡입 장애가 우려되므로 제진기 등이 추가 필요하지 않는 수종 및 주민들의 쾌적한 이용을 위하여 방향성 수종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보완할 것
- 기반환경조사에 수질 항목을 추가하여 그에 따른 우수지 수질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보완 할 것

붙임 : 위원별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각 1부.

##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 안건명 : 우수지 관리 기본계획 용역(용역발주심의)

분 야	채 택 의 견	비 고
상하수도	<p>1.과업명“우수지관리 기본계획”용역을 과업의 목적과 성과품 활용등을 고려하여 과업 내용서에 다음내용을 추가토록 요망. - 기존 우수지의 치수 및 이수 기능과 시민 문화 활용공간 으로 기능 향상 또는 추가기능에 대한 과업내용을 구체적 으로 포함토록 추천함.</p> <p>2.5page 기본계획 시범사업 2개소에 대하여 복개, 미복개 또는 체육시설, 주차장등 주민편의시설, 생태공원등으로 다양 한 조건에 대하여 서울시 전체 대상 우수지 검토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제시 후 용역수행 과정에서 최종선 정 될 수 있도록 과업내용서 보완 요망</p> <p>3.15page 설계시 고려사항을 “기본 계획”시 고려사항으로 변경 추천함.</p> <p>4.본 과업은 도시시설 결정과 하천 이용에 관한 하천법등 관 련 법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16page “상위관련 계획 검토”을 “상위관련 계획 및 법규검토”로 수정 변경 후 구체적 인 관련 법규를 명시토록 보완 요망</p>	
종합의견	조건부채택	

2018년 1월 24 일

심의위원 : 도 중 호



#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 안건명 : 우수지 관리 기본계획 용역(용역발주심의)

분 야	채 택 의 견	비 고
수자원	<p><b>1. 우수지 활용의 제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깨끗한 우수지 조성을 통한 생태공간 및 복합시민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데 걸림돌은 생활하수의 악취발생</li> <li>- 생태공원으로 조성된 우수지조차 이용객이 별로 없는 실정임.</li> <li>- 깨끗한 우수지 조성을 통한 생태공간 및 복합시민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악취제거방안 적극도입 필요</li> </ul> <p><b>2. 기초조사</b></p> <p>1) 우수지 활용현황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사용중인 주차장, 체육시설, 생태공원에 대한 이용객의 만족도 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li> </ul> <p>2) 악취원인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지 유입관거가 분류식인지 합류식인지 확인요망</li> <li>- U형 유입관거인지?, □형 유입관거인지? 확인</li> <li>- 우수지내 청결현황</li> </ul> <p><b>3. 관련계획 검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우수지 활용계획에서는 생태공원 12개소, 체육공원 17개소, 광장 9개소, 쉼터 5개소, 주차장 2개소, 주변개발과 연계 7개소등을 제시하였음.</li> <li>- 기 수립된 우수지 활용계획에 따른 정비추진현황 및 문제점 분석</li> </ul> <p><b>4. 기본구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운영중인 비선호시설은 철거방안 수립</li> <li>- 악취저감효과가 있는 우수지 활용방안 수립 - 우수지 유입관거가 분류식인 경우 생태공원등 다양하게 활용방안 수립</li> <li>- 악취가 심한 우수지는 악취저감방안 및 단계적 시행방안 수립</li> </ul>	
종합의견	<b>조건부채택</b>	

2018년 1월 29일

심의위원 : 명 남 재 (서명)



#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 안건명 : 우수지 관리 기본계획 용역(용역발주심의)

분야	채택의견	비고
상하수도	<p>1. 조사내용(p.16) 인문/사회현황조사의 주변현황 조사에서는 우수지 인근의 체육시설, 도서관, 생태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격거리와 현황을 조사토록 하여 우수지 활용계획에 반영토록 할 필요가 있음(균형감 있는 도심 서비스 인프라 구축)</p> <p>2. 기본계획(시범사업 2개소)(p.19) 공간활용계획에서 방재시설과 주민이용시설의 공간적 분리토록 요구하는 것 이외에 시간적 활용계획을 추가하여 방재시설 가동과 이용과 피난 등의 경보와 알람, 주민시설 제한 시점 등을 제시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이 되도록 제시</p> <p>3. 우수지 환경복원계획(p.20) 식재계획 수립시에는 활엽수 등 낙엽에 의한 펌프시설 등의 흡입 장애나 제진기 등이 추가 필요하지 않는 수종을 식재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이용을 위하여 방향성 수종을 우선적으로 검토토록 함.</p> <p>4. 사업계획(p.20) 관리운영계획 수립시에는 기존 방재시설 운영요원 이외에도 별도의 유지관리 시설물 운영요원을 배치하여 최상의 대시민 서비스가 되도록 유지관리 조직계획 등을 제시토록 함.</p>	
종합의견	조건부채택	

2018년 1월 24 일

심의위원 : 김 대 환

#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 안건명 :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용역(용역발주심의)

분 야	채 택 의 견	비 고
수자원 개발	<p>1. 과업의 내용 추가</p> <p>(1) 제2장 조사업무에서 조사측량(지형현황측량, 종·횡단측량), 3) 상위 관련계획 검토에서 주변지역(유수지 유역)의 개발계획 또는 개발사업, (2) 관련계획에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추가</p> <p>(2) 제3장 분석 및 평가업무에서 기존 유수지 시설의 치수안정성 검토 추가 - 기후변화 및 유역개발에 따른 유수지 시설의 적정성 검토</p> <p>(3) 제4장 기본구상 및 계획의 1. 기본구상에서 유수지 시설 도입에 따른 치수안정성 검토 추가</p> <p>(4) 제4장 기본구상 및 계획의 2. 기본계획에서 주민의견수렴 추가</p> <p>2. 내용 추가</p> <p>(1) 제1장 일반사항의 10. 신기술·신공법의 도입 등의 2)에서 안전성 추가 (p.10)</p> <p>(2) 제1장 일반사항의 22. 준수사항 및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의 2)의 (5)에서 “~경제성, 시공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를 “수리조건, 생태특성과 더불어 경제성, 시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로 수정(p.15)</p> <p>3. 오타 수정</p> <p>(1)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은 하천기본계획으로 수정</p>	
종합의견	조건부채택	

2018년 1월 24일

심의위원 : 노 경 수

#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 안건명 :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용역(용역발주심의)

분야	채택의견	비고
수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반적으로 과업범위 및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음.</li> <li>- P6의 내용수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과업의 기본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치수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한다.</li> <li>=&gt; 기존저류용량 및 시설용량 등을 고려하여 홍수시 내수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수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li> </ul> </li> </ul> </li> <li>- P7의 내용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 발주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li> <li>(2) 연락처 :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Tel (02) 2133-3873</li> </ul> </li> <li>=&gt; 공고시 공고문에 기재</li> </ul> </li> <li>- P12의 내용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6. 용어의 해석 (1), (2)</li> <li>=&gt; 전체내용 삭제, 필요시 부록에 기술</li> </ul> </li> <li>- P16의 내용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사항목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존시설현황</li> <li>1. 조사내용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존시설현황</li> <li>(1) 펌프시설용량 및 제원 현황 등</li> <li>(2) 유수지 저류용량, 저수위(LWL), 홍수위(HWL) 등</li> </ul> </li> </ul> </li> </ul> </li> <li>- P22의 성과품 내용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최종 성과품</li> <li>종합보고서</li> <li>=&gt; 보고서(변경), 요약내용(4~5P 정도)을 본보고서 기술</li> <li>요약 보고자료(PPT) 20부</li> <li>=&gt; 납품 생략</li> </ul> </li> </ul> </li> </ul>	
종합의견	<b>조건부채택</b>	

2018년 1월 29 일

심의위원 : 이영식

#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 안건명 : 우수지 관리 기본계획 용역(용역발주심의)

분야	채택의견	비고
조경	<p>1. 2장 조사업무                      우수지의 생태적 활용성에 있어서는 심도 있는 분석과 계획, 운영프로그램 등 유지관리가 조성 이후 사업의 성공여부를 좌우함에 따라 기초조사에 대한 사항을 보완 바람</p> <p>① 1. 조사항목을 크게                      1) 광역조사 와 2) 대상지 조사로 범위를 구분할 것</p> <p>② 특히 광역조사에 있어서는 n)자연환경조사 항목 추가 하여 (1)자연환경가치 -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 평가도 비오톱지도 등 생태등급지도를 활용 우수지의 생태적 활용 계획시 생물서식지로서 적합성 여부 판단, 인근 하천 및 수생태계와 연계 가능성을 파악하고 인문환경조사 자료를 통해 주택가 분포에 따른 이용객, 인근교육시설 연계 생태학습 활용가능성 조사 등이 수반되어야 함.                      이에 부적합시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지 않는 방향으로 기준을 수립하여 주변 환경과의 적합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할 것</p> <p>③ 기반환경조사에서                      수질 항목을 추가하여 그에 따른 우수지 수질관리방안 수립하도록 할 것</p> <p>④ 기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조사 중                      국내·외 사례조사에 있어서는 조성 형태 및 현황만 조사 할 것이 아니라 우수지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한</p>	

	<p>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등 성공, 실패 사례를 면밀히 조사하여 관리운영 계획 부분에 반영하도록 할 것</p> <p>2. 4장 기본구상 및 계획 4. 기술협의 항목</p> <p>조성단계에서 협의되는 내용 뿐만 아니라 원활한 운영 및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지역 협의체구성 계획 부분을 추가하여 주민설명회나 간담회 등이 끝나고 이를 구체화한 협의체를 구축하는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할 것</p>	
<p>종합의견</p>	<p>조건부 채택</p>	

2018년 1월 25일

심의위원 : 김 지 현 (서명)

#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 안건명 : 우수지 관리 기본계획 용역(용역발주심의)

분야	채택의견	비고
상하수도	<p>1. 조사내용(p.16) 인문/사회현황조사의 주변현황 조사에서는 우수지 인근의 체육시설, 도서관, 생태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격거리와 현황을 조사토록 하여 우수지 활용계획에 반영토록 할 필요가 있음(균형감 있는 도심 서비스 인프라 구축)</p> <p>2. 기본계획(시범사업 2개소)(p.19) 공간활용계획에서 방재시설과 주민이용시설의 공간적 분리를 요구하는 것 이외에 시간적 활용계획을 추가하여 방재시설 가동과 이용과 피난 등의 경보와 알람, 주민시설 제한 시점 등을 제시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이 되도록 제시</p> <p>3. 우수지 환경복원계획(p.20) 식재계획 수립시에는 활엽수 등 낙엽에 의한 펌프시설 등의 흡입 장애나 제진기 등이 추가 필요하지 않는 수종을 식재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이용을 위하여 방향성 수종을 우선적으로 검토토록 함.</p> <p>4. 사업계획(p.20) 관리운영계획 수립시에는 기존 방재시설 운영요원 이외에도 별도의 유지관리 시설물 운영요원을 배치하여 최상의 대시민 서비스가 되도록 유지관리 조직계획 등을 제시토록 함.</p>	
종합의견	조건부채택	

2018년 1월 24 일

심의위원 : 김 대 환 

#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 안건명 : 우수지 관리 기본계획 용역

○ 분 야 : 종합

항 목	채 택 의 견	비 고
토목,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법규 및 기준, 부처명 등은 최신기준으로 수정할 것 (p.13.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장 21.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2). (1). '국토해양부' → '국토교통부'</li> <li>- "건설기술관리법령" → "건설기술진흥법령"</li> <li>-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li> <li>- 21.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에 '지진재해대책법' 수록</li> </ul> </li>   <li>○ '10. 신기술·신공법의 도입 등' 내용 수정할 것(p.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li> </ul> </li>   <li>○ '2. 조사내용'. 아래 내용을 보완 할 것 (p.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기반환경 조사에 '생태, 경관 및 수질(악취발생)' 내용 등을 추가</li> <li>- 4)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조사에 " 우수지 관련 지역주민 요구 사항 등 민원현황" 내용을 추가 할 것</li> </ul> </li>   <li>○ '2. 기본계획 (1) 이용 및 시설계획'에 아래 내용 추가(p.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계획에 따른 우수유출량 변화, 홍수량에 따른 홍수위 변화를 예측, 평가하여 수리수문환경의 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한다.</li> <li>- 침수로부터 복구가 용이하고 우수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설을 고려한다.</li> </ul> </li>   <li>○ 우수지 복개에 따른 저수 용량 감소에 대한 대책 및 빗물의 빗물펌프장 흡수조 유입시 지장 여부 검토 필요</li> </ul>	

- '2. 기본계획 (2) "유수지 환경복원계획"에 아래 내용 추가할 것(p.20)
  - 생태·환경공간 조성시 대기환경 개선 및 기후변화에 대응이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 제출' 에 아래 내용을 추가할 것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에 해당 용역의 정보를 입력한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 설계 등 용역업자의 실적통보 및 공개 등에 관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 5. 하도급 사항은 아래와 같이 수정할 것

-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나 계약서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하도급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의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7일 이내의 통지예정 기한을 정하여 지체없이 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내용에 계약상대자 소속 참여기술자의 투입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추가할 것

-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 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3개월 단위로 제출하되 과업 착수후 3개월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투입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별 투입기록( 월)

성 명 : 인  
 책임기술자 : 인

월/일	투입시간	휴일(야간) 근무시간	수행업무	비 고
6/1				
.				
.				
6/31				

- 제4장 기본구상 및 계획에 과업목적에 대한 과업내용 보완.
  - 본 과업의 중요한 목적인 우수지 복개 요구 민원 증가에 따른 우수지에 대한 방재, 생태, 환경 등을 고려한 **명확한 우수지 관리 기준을 제시하도록** 과업내용에 보완 검토
  - 복개에 대한 기준마련을 위해 우수지 복개에 대한 **'재해발생 영향 여부'** 검토 필요
-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시 조경분야 전문가로 '서울시 공공조경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환경, 교통 및 재해 영향평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속가능성 평가' 대상 여부를 검토토록 할 것
- '제7장 성과품 납품'에는 다음 내용을 보완 할 것
  -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 및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용역 완료시 전체 용역성과품 3부 및 CD 1부(표준포맷)를 서울도서관에 제출하고, 용역 준공시 정보소통광장 공개현황(화면출력) 및 서울도서관에서 발급받은 제출확인서 재무부서 제출토록 되어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해당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018년 2월 일

심의위원 : 김 홍 길 